[강릉시 공고 제2026-1728호]

2027년 장애인일자리(전일제,시간제)사업 참여자 모집공고

우리 시(市)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1일

강 릉 시 장

※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

☐ 일반형일자리(전일제): 46명(주5일 40시간, 월급여 2,236,300원)

☐ 일반형일자리(시간제): 21명(주5일 20시간, 월급여 1,123,500원)

※ 실수령액은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, 소득세 등 공제 후 지급되므로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※ 퇴직금 : 2027.1.1. ~ 12.31.까지 참여한 참여자에 한하여 지급

1. 근무조건

☐ 근무기간: 2027년 1월 1일 ~ 12월 31일(12개월)

☐ 근무내용: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담지원,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(단체) 행정보조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

☐ 근 무 지: 강릉시청, 읍·면·동주민센터, 사회복지시설(단체), 비영리단체 등

2. 모집기간 및 분야

☐ 공고기간: 2026. 11. 1.(일)~11. 13.(금) **※ 13일간**

☐ 접수기간: 2026. 11. 11.(수)~11. 13.(금) 14:00~17:00 **※ 접수시간 엄수**

☐ 면접일시: 2026. 11. 18.(수) ***예정*** **※ 면접 및 결과통보 일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.**

☐ 선발결과: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하며 발표일은 면접 당일 공고

☐ 모집분야

-전일제: 46명(직무: 전담지원행정도우미,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(프로그램 지원)요원)

-시간제: 21명(직무: 행정도우미, 복지서비스(프로그램 지원)요원)

▢ 직무유형

*** 배치기관 및 배치부서의 여건과 참여자의 능력 및 소질을 고려, 희망직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직무별 인원은 배치기관의 사정 및 참여자 능력 등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**

연번	직무명	직무개요	비 고
1	행정도우미	공공기관 각종 행정사무와 보조	pc사용(워드), 간단한 민원응대, 서류정리, 문서파쇄 등
2	복지서비스	복지관 및 복지단체 업무보조 및 서비스 지원	이용인 응대, 환경 미화, 재료 준비, 카페 업무
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▢ 신청자격: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일(2027. 1. 1.)기준,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

▢ 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
▢ 가점대상: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, 취업지원대상자, 우수참여자, 졸업예정자, 여성가장, 기초생활수급권자, 컴퓨터, 복지 관련 자격증소지자*

***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제공 - 각 분야별 1개 자격증만 인정함**

분야	가점대상 자격증
복지분야	사회복지사, 장애인재활상담사,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 관련 국가 공인자격증
사무분야	컴퓨터활용능력, ITQ자격증 등 행정사무에 활용가능한 국가공인 또는 국가공인(민간)자격증
그 외	업무 배치 시 고려사항으로 가산점 없음
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
① 국민건강보험 **직장가입자**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
※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(ex. '27년 신청자의 경우, '26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)
② **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**
③ **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**
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**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**
※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※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*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지원을 위한 전담지원 행정도우미,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
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※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
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※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
[의제01254-15864호(1987.6.26.)]

(참고)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,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

4. 제출서류

<<필수서류>>

① **참여신청서[서식7]** : 희망직무 기재 필수

② **참여자 정보 확인서[서식8]**: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, 장애등록 여부,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, 미취업 상태 여부,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

③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[서식9]**

※ '참여신청서' 및 '개인정보동의서' 작성 시, 자필서명 필수
다만,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(ex. 도장 등)

<<추가서류>> * 해당자에 한함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증빙서류</th></tr>
<tr><td>① 자격증 소지자</td><td>- 관련 자격증 사본 1부</td></tr>
<tr><td>② 졸업예정자</td><td>-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
※ 졸업예정증명서 등</td></tr>
<tr><td>③ 여성가장</td><td>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첨 부 서 류</th></tr>
<tr><td>공통사항</td><td colspan="2">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</td></tr>
<tr><td rowspan="10">선택사항</td><td>부모 부양시</td><td>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
(의사진단서, 생계급여수급자 등)</td></tr>
<tr><td>가출 · 행방불명</td><td>실종신고서</td></tr>
<tr><td>장애</td><td>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
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</td></tr>
<tr><td>질병으로 요양 중</td><td>의사의 진단서</td></tr>
<tr><td>군복무</td><td>복무확인서</td></tr>
<tr><td>학교 재학</td><td>재학증명서</td></tr>
<tr><td>교도소 입소</td><td>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</td></tr>
<tr><td>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
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</td><td>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
확인서</td></tr>
<tr><td>이혼소송 제기</td><td>이혼소송확인서</td></tr>
<tr><td>기타 가족 생계 부양</td><td>통·반장의 확인서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④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</td><td>-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 공문 등 증빙서류</td></tr>
<tr><td>⑤ 취업지원대상자</td><td>-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
※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,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1조,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5조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,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2조,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</td></tr>
</table>

구분	증빙서류
⑥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	- 상장사본(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) - 상장사본(장애인일자리관련 시·도지사 및 시·군·구청장 표창) ※ 최근 3년(24년~26년) 이내 사용가능

※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

(참고)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을 말함

① 미혼여성이거나,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·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·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

* 18세 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)인 자녀를 양육, 60세 이상의 (조)부모 또는 배우자의 (조)부모를 부양, 장애·질병이 있는 동거가족(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)을 부양

※ 관련근거 :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

5. **접수방법: 신청인 직접 방문 제출(14:00~17:00) ※ 접수시간 엄수**

6. **접 수 처: 강릉종합운동장 원정팀대기실**

   - 주소: **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69 / 연락처: 033-640-5346**

7. **기타 참고사항**

   ○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(1년) 동안 '적극적인 구직활동'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(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)

   ***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서류(아래 가)~라) 중 한가지 이상 증빙**

   가) 취업지원 프로그램*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

   * 취업지원 프로그램: 취업성공패키지,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,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,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,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, 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, 대한노인회를 통한 취업지원프로그램,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

   나) 직업재활서비스(직업훈련) 확인서[서식33-2] 및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통한 증빙 제출(장애인직업재활기관을 통한 직업상담, 취업알선, 직업 훈련 내역 등)

   다)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등

   라) 워크넷의 구직등록 내역 등 구직등록필증

   ○ 사업유형 변경(중도종료 후 재입사) 시 퇴직금 미지급

   ※ 예시: 일반형일자리 시간제(1.1.~5.31.) → 전일제(6.1.~12.31.)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

   ○ 사업유형 변경(중도종료 후 재입사) 연가: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

○ 동점자 처리기준

- 1순위: 최근 3년간(24~26년,이하같음)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2순위: 최근 3년간 참여이력이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, 최근 3년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- 3순위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여성가장
- 가점대상: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,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(모든유형, 타 지역포함), 졸업예정자, 관련자격증 소지자

○ <u>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</u>

* 근로소득 발생으로 인한 수급권 변동여부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

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

○ 수급(권)자의 근로·사업소득 공제 범위(2026년 기준)

- 34세 이하 수급(권)자 및 대학생: 월 근로·사업소득에서 6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의 30%를 추가 공제
-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: 월 근로·사업소득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의 30%를 추가 공제

※ 실제 공제 적용 및 급여 변동 여부는 개인별 수급 자격과 소득·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사업 참여 전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※ 2027년 공제 기준은 해당 연도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」에 따릅니다.

○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

* **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**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"성범죄"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)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)해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* **「장애인복지법」**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"취업제한기간")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"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")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* **「사회복지사업법」** 제35조의2(종사자)
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* **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**
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 "취업제한기간"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(이하 "노인관련기관"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"취업제한명령"이라 한다)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

○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.

*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'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'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(노동부 차별개선과-2468)

○ 장애인일자리 (일반형) 직무 특성 상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배치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로지원인의 업무 지원을 참여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.

○ 선발인원 외의 인력은 대기자로 등록되며 결원 발생 시 대기자가 우선으로 선발되나, 대기자가 없거나 대기자 중에 직무 적합자가 없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자를 재모집할 수 있음.

○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

[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]

*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

- 이 고지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
- 강릉시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7년 1월 2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-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당사로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(na010k@korea.kr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강릉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7년 5월 30일(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)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」에 따라 보관·관리될 예정입니다.

2026년 11월 1일
강릉시청

*** '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' 서식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강릉시청 홈페이지의 '고시/공고' 게시판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**

*** 신청서 접수 및 면접 참여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(미지참시 면접 참여 불가)**

*** 원활한 면접 진행과 면접위원 및 다른 참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면접장 내 녹음·촬영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,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참여자의 면접 대화나 심사위원 간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지됩니다.**

※ **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**

※ 기타 문의사항은 강릉시청 경로장애인과 **장애인복지팀(TEL. 640-5346)**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1일

강 릉 시 장